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17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진성준·김성환·강선우

박 정・박홍배・박홍근

이용우 · 박해철 · 김 윤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 를 두도록 규정함.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 함.

지난 2023년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식적인심의절차 없이 졸속으로 취소 결정했음. 이에 더해 환경부는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보 처리 이행계획 및 보 상시개방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경부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위원들의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였음.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유역물관리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메일 교환등으로 형해화·무력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안건에서 유역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는 해당 유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의결·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물관리위원회의심의·의결 절차에서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7조).

법률 제 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유역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2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o</u>]
<후단 신설>	경우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
	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
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	립 등) ①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과 협의하고 <u>국가물관리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와 유역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	리기본계획 중 유역에 관련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에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u>서 같다)</u>
	<u>.</u>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②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	

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국가물관리위원회</u>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 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 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 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 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③
·
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